

스웨덴 연금제도 발전과정과 이해관계자 집단의 갈등조정에 대한 분석

최 연혁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1. 서론

어느 나라든 제도의 발전과 변화에는 일정한 틀이 존재하기 마련이다. 먼저 제도의 생성과정에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영향을 받는 이해당사자들의 자원분배와 사회적 가치를 둘러싼 갈등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Choe 2011). 제도의 구축, 변화 그리고 개혁 등에 있어서도 이러한 갈등 및 이해관계의 충돌은 동일하게 적용된다. 처음 제도를 만들 필요성의 제기는 정치적 목표와 이상의 실현, 그리고 정치적 권력의 확대와 유지 차원과도 연관성이 높다. 예를 들어 사민당 혹은 노동당 같은 좌익계열의 정당들이 노동자 및 사회소외계층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은 국민의 행복권을 추구하고자 하는 정치적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추진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함께 이런 제도를 구축하는 과정에서 정치적 권력 확대 및 선거전략적 차원에서도 접근되기도 한다. 즉 제도의 구축을 통해 새로운 지지층의 생성 및 고정지지층의 관리를 용이하게 하기 때문이다.

제도의 변화시도에 대한 논리도 유사하다. 시행되고 있는 제도가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좋은 호응도를 나타내고 있지만, 사회적 변화 즉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저출산, 의학의 발달로 인한 건강의 증대와 삶의 질의 개선에 따른 노령화의 진행, 경제성장의 저하 및 실업자의 증가 등과 같은 사회, 경제적 요소 변화에 따른 변화의 압력이 있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외생적 변화의 압력을 개혁의 주체인 정당들에 있어서는 전략적으로 접근하지 않을 수 없다. 즉 개혁을 통해 정당의 지지도를 확대하거나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와 마찬가지로 개혁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당사자, 즉 연금제도 개혁의 경우 연금생활자, 실직수당 개선의 경우 실질자 등이 어떤 입장과 지지를 갖느냐에 따라 전략도 달라질 수 있다.

이 글은 스웨덴이 1913년 세계에서 처음으로 실시되기 시작한 국민연금제도가 1930년대의 논쟁을 거쳐 최근까지의 국민기초연금제도 변화되는 과정에 초점을 둔다.

1930년대 이후 1950년대의 논쟁을 거쳐 이른 추가연금제도 (Allmän Tilläggspension, ATP)의 도입, 그리고 1999년 신연금법의 제정을 통한 새로운 제도로의 변경 등이 어떤

사회적 논의를 통해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이 과정에서 각 좌우정당들의 협상전략, 이익단체들과의 협력관계, 그리고 연금생활자 및 일반 유권자들의 반응 등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변화를 이끌어 왔는지 분석해 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글에서는 또한 2006년 우익정권 하에서 연금생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세계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었는지를 검토해 보면서 연금생활자들의 소득세에 대한 불만을 어떻게 무마하려고 노력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성격상 기술적, 서술적 그리고 역사적, 분석적 방법론을 채택하고 있다. 스웨덴의 국가보고서인 SOU와 스웨덴의 연구단체인 연금포럼이 집중적으로 소개한 연금개혁 연구시리즈를 중심으로 다양한 이해당사자들의 입장과 제도의 생성, 변화, 개혁의 틀을 기술해 보고 이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또한 역사적으로 전개하는 부분에서는 스웨덴 통계청에서 발행된 당시의 통계자료 등을 활용하여 비교적 관점을 돕고자 했다. 시기적으로는 국민기초연금제를 보완하기 위한 진행된 1950년대의 추가연금개혁 논의를 배경으로 1980-90년대 이른 최근의 연금개혁을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스웨덴의 경험이 한국의 연금개혁에 어떤 의미를 시사하고 있는지 논의를 통해 몇 가지 한국적 상황에 적용해 볼 수 있는 유의한 제안을 해 보고자 한다.

2. 스웨덴 연금제도의 발전과정: 1913-1970년대

스웨덴의 연금제도는 일찌감치 1913년 부터 상징적 수준으로 연금을 지급하기 시작한 이래 최근 2000년 이전까지 이루어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 지속적으로 발전해 왔다. 우선 세계 최초로 1914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국민기초연금은 당시 67세 이상의 남성에게 매달 6.25 크로네로 당시 일반노동자 연 수입이 326 크로네였기 때문에 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월급의 22 퍼센트였다 (Socialstyrelsen 1929: 17 쪽). 일상 생활비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기는 했어도 노인층의 절대빈곤을 줄이는데는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 스웨덴 최초의 연금지급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지급된 연금은 전액 국고지원으로 국민의 일반세금으로 재원이 마련되었다는 데에 있다. 즉 개인의 노동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67세 노인들에게 지급한 제도로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일생의 너무 늦은 시기에 연금이 지급되었기 때문에 당시 평균수명이 남성이 55세, 여성이 58세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혜택을 받은 노인 비율은 매우 낮았을 것으로 보인다 (평균 수명에 관한 자료는 스웨덴 통계청의 자료

http://www.scb.se/Pages/TableAndChart____25830.aspx 를 인용).

1937년에는 보다 체계적인 국민연금법을 제정해 실질적으로 지급될 연금의 수준을 획기적으로 인상했다. 봉급수준에 관계없이 연 320 크로네를 지급해 당시 일반 노동자

평균 임금수준인 연수입 935 크로네의 34 퍼센트까지 이르게 되었다 (Socialstyrelsen 1937: 27 쪽). 따라서 이 기간은 23 년동안 큰 변화없이 유지되어 왔던 1914 년 연금제도를 실질적 임금상승에 따른 연금의 인상 뿐 만 아니라 워낙 낮게 책정되어 있던 연금을 연금생활자들의 생활수준 개선을 위한 사회적 요구에 따른 대응책으로서의 근본적 제도개혁이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된다.

2 차대전 이후 국가의 보다 적극적인 사회재난 대책과 노인의 삶의 질에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는 사회적 요구가 거세가 일어났다. 즉 전쟁에서 국가가 젊은 청년들이 피를 흘렸다면 국가는 국가건설을 위해 봉사한 노동자의 삶을 책임질 필요가 있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당시 사민당 정부는 1946 년 국민기초연금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노동의 여부에 관계없이 노년기간 동안 평안한 삶을 갖을 권리가 있다는 노선을 채택했다. 이 국민기초연금법은 노령연금이 스웨덴의 모든 국민이 누려야 할 시민적 권리로 규정했다.

1946 년 이후 연금수준은 개인 연 1000 크로네, 부부 1600 크로네로 조정되었다. 1946 년 당시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임금수준이 3296 크로네로, 임금수준 대비 개인 연금의 비율이 30,3 퍼센트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1937 년 개혁 당시 연금수준이 일반 노동자의 연평균 수준의 34 퍼센트까지 차지했던 것에 비해서는 낮아진 수준이었으나, 1946 년 연금제도는 저소득층 노인층에 대한 특별지원제를 도입해 주택수당을 지급해 일부 생활비 결손 부분을 충당하도록하고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또한 여성이 일하지 않은 경우를 감안해 특별지원금을 배정했고, 지병이나 노인병으로 인한 신체적 장애가 있을 때 가족지원금을 추가로 배정해 노인가족이 실질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줄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1950 년대는 스웨덴 연금제도의 획기적 변화를 꾀하던 시기였다.1951 년 과 1957 년 사이 사민당과 농민당의 좌우연정은 1950 년대 초 사민당이 주도하고 중앙노조가 함께 추진한 연금제도 개혁으로 인해 금이 가고 있었다. 2 차 대전 이후 두가지의 갈래로 연금제도에 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첫째는 연금을 단순히 기초안정의 차원에서 노동자를 지원하고자 했던 방안이었고, 두번째는 사회적 정의차원에서 사무직 노조원들의 직장연금에 버금가는 추가연금을 제공하자는 안이었다 (Lundberg 2001: 10-11 쪽). 첫번째 안은 당시 사회부 장관이었던 구스타브 뮐러 (Gustav Möller)가 추진했던 정책으로 1930 년대와 40 년대의 정책은 이 안에 따라 유지되었다. 하지만 1951 년 군나르 스트랭 (Gunnar Sträng)이 사회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이 정책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 들었다. 스트랭 자신이 노조원 출신으로 정치에 입문했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는 것이 사회적 정의라는 시각이 지배하기 시작했다. 당시 사무직 노동자 들이 회사로부터 받고 있었던 근무연한에 기초한 개인 연금은

노동자들의 연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노동자들 사이에는 이것이 가장 큰 사회적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고 보았다 (Lundberg 2001: 12 쪽).

당시까지 사무직 노조에 몸담고 있던 신 중산층은 중도보수 국민당이나, 농민당을 지지하는 양상이었기 때문에 사민당 입장에서는 신중산층의 지지없이 점차 감소하고 있었던 비숙련 육체노동자의 비율로 인해 장기적 수권에도 문제가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노동자들과 신중산층의 지지를 동시에 확보하기 위해 사민당은 국민기초연금과 함께 직장생활과 연계된 국가연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하기 시작했다. 1951년 당시 사민당과 연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중앙당의 경우 국가가 추가연금을 책임지지 않고 고용주가 제공하는 개인연금제를 지속해 나가자고 주장했으나, 노조의 지원을 받고 있던 사민당은 직장 생활과 연계된 연금을 국가가 관리해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신중산층에도 지지를 호소하는 방안이었기 때문에 강력히 추진해 나갔다.

결국 1957년 국민투표로 붙여진 추가연금 논의는 세가지 안을 중심으로 초점이 모아졌다. 첫째, 추가연금은 직장생활의 봉급수준에 따른 차등 연금을 국가가 관리한다. 둘째, 개인연금은 현 체제 그대로 고용주와 개인적으로 체결한 계약에 따라 책정한다. 셋째, 위의 두번째 안과 비슷하지만, 고용주와 노동자간 단체협약으로 부쳐 개인 연금의 수준을 책정하도록 할 수 있다. 제 1안은 사민당과 좌익당이, 그리고 2안은 보수당이, 제 3안은 중앙당이 지지를 표명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안을 가지고 국민투표에 붙인 결과 제 1안이 45,8 퍼센트, 2안 15 퍼센트, 그리고 3안은 35,3 퍼센트를 얻어 제 1안이 탄력을 받았다. 국민투표로 인해 사민당과 중앙당의 공조체제는 깨지고 결국 사민당만 남아 단독 소수 내각을 이끌었다. 국민투표에서 과반수를 넘지 못해 진정한 민주적 정당성은 얻지 못했지만, 다수당인 사민당이 좌익당의 도움과 국민당 의원 1명이 기권을 포함 의회에서 과반수로 통과되어 일반추가연금 (Allmän Tilläggspension: ATP, General Additional Pension)이라는 명칭으로 196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제도는 30년 동안 직장생활을 한 노동자들이 15년 동안의 최고 소득을 바탕으로 추가연금의 수준을 책정해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보장하도록 한 소득비례식 연금이였다. 이 제도의 특징 중의 하나는 추가연금의 상한을 국가가 매년 정하는 소비자물가와 연동하여 7.5 배의 소비자물가 지수로 하였다는 점이다. 그러나 ATP 제도는 개인 연금 생활자가 한푼도 내지 않는 공적자금, 즉 일반 세금으로 만들어진 것이였다. 세원은 주로 60년대에 신설되어 70년대에 걸쳐 확대되었던 고용주기금 (Arbetsgivaravgift, Pay-roll Tax), 즉 사회보장성 기금을 피고용자의 세전 임금수준의 일정 부분 (1970년 기준 11.90%에서 1980년 32.45%)을 국가에 지불하는 기금으로 사용했다.

따라서 이 제도의 시행결과 국가연금제도가 확충되어 사무직노조원들의 경우 개인 연금을 직장으로부터 받던 것을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로 들어가자, 신중산층의 상당

부분이 사민당의 지지세력으로 돌아서는데 중요한 기폭제가 되었다. 즉 이전에는 직장 고용주와의 개인계약관계로 개인연금을 설정했었던 사무직 노동자들, 특히 공공서비스 업종에 종사하던 공무원 들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제도의 수혜자가 되면서 사민당의 지지자로 전향된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 사민당의 지지도는 산업구조의 개편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의회세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게 되었다. 1968년 선거에서 사민당이 과반수를 넘는 국민적 지지를 받을 수 있었던 배경에도 이 같은 신중산층의 지지가 중요한 요소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익정당 들에게는 뼈아픈 패배를 안기게 된 셈이다 (Lundberg 2001: 52 쪽).

1969년 들어서는 직장생활이 짧거나, 소득이 적어 추가연금의 수준이 낮은 퇴직자들의 소득수준을 보전해 줄 수 있는 특별기금을 마련해 노인 저소득층 지원을 강화해 나갔다. 1975년에는 67세이던 연금연령을 65세로 인하하고 수혜자의 수를 점차 늘려 나가면서 결과적으로 1959년 체제는 1980년대까지 스웨덴의 기간연금제도로 큰 틀의 변화없이 굳건이 자리를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 제도도 몇 가지 문제점은 안고 있었다. 문제점으로 지적된 것으로 첫째, 사회의 임금구조에서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사회적 격차를 퇴직 이후에도 추가연금의 차이로 인해 고착화 되는 현상이 발생했다. 즉 근무기간 중 최고 15년의 임금수준이 추가연금의 수준에 결정적 근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관리직, 전문직 직업 종사자들이 퇴직 이후 연금생활의 질도 현저히 높게 유지되면서, 연금생활자들의 사회적 격차는 사회적 지위에 따라 결정되었다. 즉 노인 삶의 질도 퇴직 전의 직업에 따라 결정되면서 이 제도가 너무 사회적 약자에 취약한 구조가 아니냐는 비판을 받기 시작했다.

둘째, 추가연금제의 가장 큰 약점으로 여성의 사회약자적 지위의 고착화 현상이 지적되었다. 여성의 출산 및 무보상 가정노동으로 인해 구조적으로 남성에 비해 임금소득이 낮을 수 밖에 없는 사회적 불평등 구조였기 때문에 퇴직 이후 남성과 여성간의 삶의 질의 차이가 그대로 존재하고, 한 발 더 나아가 퇴직 여성들이 남편들의 퇴직금에 의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이다. 즉 여성해방론자들의 입장에서는 추가연금제가 여성의 약자적 지위를 고착화하는 주 원인으로 분석하고, 이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했다(Lundberg 2001: 20-21 쪽).

셋째, 30년 이상 장기근속을 한 사람들만 최고수준의 추가연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고, 15년간 최고 임금에 근거해 연금수준이 산출되었기 때문에 임시직 종사자나 장기간 병가자의 경우 추가연금은 거의 혜택을 볼 수 없게 하는 구조였다는 점에서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즉 단기간 고소득자라고 해도 30년 및 15년 규정 때문에 법적으로 보장하고 있는 최고연금 수준에 도달할 수 없었다는 점에 불평등제도라는

인식이었다. 국민기초연금제도와 추가연금제도를 축으로 하고 있는 연금제도는 이 같은 문제점으로 80년대 초반부터 새로운 개혁의 필요성이 강하게 부각되었다.

넷째, 위에서도 지적했듯이 ATP 제도의 핵심은 본인이 일해서 번만큼 연금으로 가져가는 것이었다는 점에서는 인센티브로 제공되었으나, 연금의 최고점을 소비자지수의 7.5 배에 해당하는 지점에 고정시켜 놓았기 때문에 임금상승율이 물가지수보다 항상 높다는 점에서 장기간 운용하다보면 결국 연금수준은 일반임금생활자보다 점점 낮아져 노인 삶의 질을 충분히 보장하지 못한다는 점이 있다. 따라서 ATP 제도가 시행되면 필수록 기준최고점을 상회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중산층 및 고소득자들의 공적연금 의존율은 낮아질 수 밖에 없게 되어 개인연금이 따로 필요하게 되면서 결국 ATP는 유명무실해질 수가 있는 상황이었다는 점에서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ATP 제도가 지속적으로 시행될 경우 2010년에는 이미 50 퍼센트 이상 되는 봉급생활자 등이 ATP의 최고 상한액수보다 높은 임금을 받게 되면서 점차 유명무실한 상태로 남아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지적되었다 (SOU 1990:76, 457 쪽).

표 1.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913	국민기초연금 지급 (6.25 크로네)
1937	국민연금법 제정(연 320 크로네 지급)
1946	국민기초연금법 제정
1957	추가연금제의 실시를 위한 국민투표*
1959	일반추가연금제의 실시결정
1969	연금제도의 추가개혁
1975	연금연령 65 세로 인하

* 1957년 실시된 국민투표는 직장생활과 연계된 추가연금제를 결정하기 위한 투표로 당시 5개 정당들의 정치성향에 따라 지지하는 안이 갈렸다. 국민투표의 문구는 다음과 같다.

- 제 1안: 의무적인 추가연금제의 도입이 필요하며 고용주가 직접 국가에 지불한다
- 제 2안: 자발적 추가연금제로 개인이 소속된 직장의 고용주와 체결한 계약에 따라 개인이 책임진다.
- 제 3안: 제 2안과 유사하지만 직장별로 단체협약을 맺어 고용주와 피고용자가 자체적으로 결정한다.

72,4%의 투표참여율을 보인 국민투표의 결과 1안 (45,8%), 2안 (15%), 3안 (35,3%)의 지지를 받았다.

3. 1980년대 이후 연금제도 개혁에 관한 논의

1980년 들어 각 정당 들은 국민투표의 결과에 따라 결정된 일반 추가연금제의 노정된 문제점에 대한 논의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추가연금제가 안고 있는 구조적 문제점과 함께 새로운 경제적, 사회적 변화로 인한 연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했다. 먼저 1980년대는 스웨덴의 경제에 어두운 먹그름이 몰려오기 시작한 시기였다. 1970년대 두번에 걸친 유가과동으로 스웨덴의 경제는 요동을 치고 있었다. 수출에 적색등이 커지기 시작하면서 스웨덴 화폐인 크로네 평가절하를 통해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했다. 1970년대에 두번에 걸쳐 평가절하를 단행한 스웨덴 정부는 1982년대 들어서도 평가절하를 단행해 스웨덴의 수출경제는 날개를 달았어도 경제의 체질은 악화되었다 (Lundberg 2001: 14 쪽).

이와 함께 인구노령화의 증가, 저출산, 그리고 저성장 기조의 고착화 등의 고도 선진산업국가의 일반적 증후군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스웨덴 평균수명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68세 정도의 평균 수명에 맞추어져 운영되고 있었던 국민연금 및 추가연금제는 강한 재정적 압박을 받게 되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게 되면서 국가의 연금재정 부담이 눈덩이처럼 늘어나게 되었고, 부양노동 인구가 점차 저출산으로 인해 줄어들면서 이중적 재정부담으로 작용되었다. 즉 노동인구의 감소 및 부양인구의 증가로 인해 세수의 감소와 지출의 증대라는 전형적인 산업복지사회의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따라서 ATP 제도는 현재 직장생활자들이 낸 세금으로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에 언젠가는 연금제도가 실패할 것이라는 상황 변화도 감지되었다.

동시에 1980년대 초반들어 영국과 미국의 신자유주의의 영향에 따라 대내외적으로도 변화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즉 공적연금의 한계에 따른 개인연금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기 시작했고, 개인의 책임성과 선택권에 대한 요구가 더욱 고개를 들게 되었다. 이 같은 사회적 변화는 당시 전세계를 풍미했던 신자유주의적 경제운영과 국가의 적극적 역할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어느 정도 작용하기도 했다. 이 같은 배경으로 1960년대에 도입되기 시작한 일반추가연금제가 20년이 된 1980년대 당시 공적기금 고갈의 문제, 노령사회로의 진입, 저출산의 고착화 그리고 세계화 등에 따른 기업경쟁력의 문제가 대두 되기 시작하면서 또 다른 전기를 맞게 되었다.

3.1 1980-90년대 논의와 각 정당과 이익단체들의 대응

연금과 연계된 정치적 논쟁은 1980년대 초 우익정권 하에서 시작되었다. 국제 유가과동을 겪으면서 수출경제가 큰 타격을 받으며 마이너스 성장으로 돌아서고 재정적자가 큰 폭으로 늘기 시작하면서 당시 우익정권은 국민연금의 물가연동성을 해제한다고 발표하면서 논의가 일기 시작했다. 즉 물가가 뛰는 만큼 이를 상쇄하기 위해

연금도 연동되어 함께 인상이 되어야 하는데, 복지비용의 증가로 인한 재정적자의 폭이 커지면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야당이었던 사민당의 입장에서는 연금생활자를 희생해 경제위기를 극복하려고 한다는 비난이 비등했다. 결국 1982년 선거에서는 경제성장의 저하와 재정적자폭의 확대를 퇴직연금을 일정 수준으로 묶어 활로를 찾아보려고 했던 우익정부의 정책패착이 되어 정권을 사민당에게 다시 넘겨주게 되었다. 사민당의 입장에서는 1976년 선거에서 패배한 후 6년 만에 다시 찾아온 정권이었다.

사민당은 내각이 구성되자마자 사회부 장관이 연금제도의 개선의지를 천명했다. 그러나 재정적자가 눈덩이처럼 불고 있던 상황에서 사민당 정권조차 선불리 연금을 일시에 인상할 수 없었다. 1982년 평가절하를 통해 스웨덴 화폐의 가치가 떨어진 상황에서 연금생활자들의 생활고는 더욱 증대되었다. 즉 수출기업은 원가경쟁력 회복을 통해 바로 혜택을 보았겠지만, 수입물가의 인상으로 인해 소비자 물가는 천정부지로 뛰고 있었기 때문에 연금의 실질적 인하를 경험하고 있던 셈이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사민당은 1984년 11월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조사 위원회를 임명했다. 그러나 특별조사 위원회의 임무는 당시 1960년부터 시행되기 시작한 추가연금제의 객관적 분석을 통해 정부와 의회의 상황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만드는 것이었다. 정권의 위치에 있었던 사민당은 처음부터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무리한 조치가 정치적 부담이 될 것이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연금제도의 문제점에 대한 지식의 축적과 새로운 연금제도에 대한 고찰, 그리고 스웨덴 연금제도를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합의도출에 그 목적이 있었다 (SOU 1990:76 쪽).

우선 우익정당들의 입장은 1950년대 개인연금에 기초한 연금제도로의 회귀를 선호하고 있었다. 특히 보수당 (Conservative Moderate Party)과 국민당 (People's Party the Liberals)은 1950년대 체제에 무게를 두고 있었다. 즉 고용주와의 계약을 통한 개인연금에 기초를 두고 국가의 통제로부터 분리시키기를 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정책방향을 관철시키기에는 정치적으로 역부족이었다. 우익계 야당 3개당을 다 합해도 과반수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정치적 타협 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셈이었다.

사회계열 정당이든 보수계열 정당이든 관계없이 모든 정당들이 인식의 일치를 본 것은 무엇보다도 사회적 변화, 경제적 압력, 그리고 재정적 한계 등으로 인해 연금제도의 개선은 필수적으로 보았다. 그러나 추가연금제의 유지를 선호하고 있었던 사민당의 안과, 1950년대 체제로의 복귀를 선호한 우익계열의 정당들의 입맛에 맞는 결론에 도달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같은 정책적 시각의 차이를 반영이라도 한듯 1984년에 임명된 연금제도 개선 특별조사위원회가 1990년에 제출한 조사보고서 SOU 1990:76은 4개의 재고사항과 8개의 합의사항이라는 결론을 도출해 냈다. 즉 4가지는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사항이었고, 나머지 8 개의 합의 사항은 모든 정당들이 동의한 사항이라는 뜻을 의미한다.

1990 년의 경제위기와 함께 4 개 우익정당 들 (이번에는 기독교민주당까지 포함)이 1991 년 선거에서 사민당으로부터 정권을 탈환하자 연금개혁의 주도세력은 이제 사민당에서 보수우익 계열 정당으로 주도권이 넘어가게 되었다. 하지만 1990 년의 조사보고서의 내용을 존중하고 의회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야 하는 부담감으로 인해 사민당과 좌익당을 연금개선 활동위원회에 포함시켜 합의안을 이끌어내고자 했다. 사민당의 경우 1984 년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가동시킨 주체자의 입장에서 거절할 이유가 없었고, 스웨덴의 전통적 합의정치에도 부합되기 때문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좌익당의 경우도 의회의 책임정당으로서 논의에 함께 참여하는 것에 대한 당내 반대 기류가 전혀 없었다. 이렇게 해서 6 개 정당이 참여하는 국정협상팀이 구성되었다.

각 당의 입장은 좌파와 우파에 따라 현저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었다. 우선 사민당의 경우 큰 변화없이 현행 국민기초연금제와 추가연금제를 바탕으로 한 연금제도의 약점만 해결해 유지하기를 원했다. 하지만 사민당의 입장은 이 협상팀과 함께 논의를 시작하면서 서서히 변화되기 시작했다. 추가연금제도의 재원은 더 이상 장기적으로 확보되기 어렵고 고소득자의 연금산정 액수는 극히 낮고, 저소득자들의 경우 연금보조 및 주택수당등으로 연금결손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던 상황에서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제도라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Lundberg 2001:18 쪽). 다시 말해 고소득자들의 경우 연금산정 초과 수입부분을 개인연금으로 저축을 시작한 봉급자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공공기금으로 운영하는 추가연금제는 존속 가능성이 희박해 보였던 것이다.

당시 트뤼한사 (Trygg Hansa) 보험회사에서 조사한 결과와 스칸디아 (Skandia) 보험회사에서 내놓은 연구결과가 매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스웨덴 국민들 중 77 퍼센트가 연금제도의 개선은 불가항력적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여론 조사였다. 스칸디아 보험회사의 연구결과는 사민당 지지층 중 87 퍼센트가 연금개혁안을 선호하고 있었다. 이와 함께 이미 시중은행들이 제공하는 개인연금에 가입한 국민의 수가 50,000 명을 넘고 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다 (Lundberg 2001:21 쪽). 즉 국민기초연금과 추가연금으로는 노후기간 동안의 삶의 질을 보장하지 못할 것이라는 국민들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 같은 상황 변화로 인해 사민당은 점차 각 개인의 기여분만큼 연금으로 되찾아가는 제도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이같은 변화는 먼저 사민당에서 감지되었고, 블루칼라 노조인 LO 내부에서는 아직도 반대의 목소리가 다수를 점하고 있었지만 서서히 사민당의 안을 따라 가는 직종별 노조의 수가 점차 늘기 시작했다. LO 산하에는 15 개의 직종별

노조가 있어 한목소리를 낸다는 것은 처음부터 불가능하지만 LO의 지도부가 사민당과 매우 밀접한 유대관계에 있기 때문에 지도부의 주도로 사민당 안에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게 이르렀다. 이에 앞서 교육자 중앙노조(SACO)가 명목확정 기여 연금제의 안을 내놓았고, 사민당이 뒤를 따르기 시작했다. 뒤이어 단순육체노동자 조직인 LO까지도 동조하기 시작하면서 좌익진영은 이제 봉급생활자들이 기여한 만큼 퇴직 후 연금으로 되찾아가는 연금제로 입장을 정리했다. 사무직 노조의 경우 처음에는 ATP 개혁에 매우 부정적이었으나, 점차 긍정적인 지지자로 탈바꿈해 갔다(Lundberg 2001: 19 & 26-27 쪽).

우익 보수계열 정당들의 연금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연금생활자들의 기초생활보장과 개인책임제를 두 축으로 하고 있다. 즉 개인의 책임성을 기본 시각으로 하면서 일생 노동 임금을 기준으로 모은 만큼 찾아가는 명목확정 기여식 소득비례연금을 선호했다. 이와 함께 연금의 운용도 국가에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퇴직자들이 연금의 일부를 직접 투자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는 것이었다. 근본적 국가연금 기금인 AP 1-5 제도에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고, 처음부터 하나의 거대한 국가연금기금보다는 분산된 위험관리와 투자가 국가의 영향력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믿었다. 이와 함께 AP 1-3가 국공채와 같은 일정한 이자수익을 낼 수 있는 안정적인 투자에만 극한하는 것이 안정적 기금운영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 이익극대화의 차원에서는 큰 도움이 된다고 보질 않았다. 따라서 근본적으로 모든 공적연기금이 주식과 부동산에도 투자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었다(Lindblom 2001: 53 쪽).

각 우익정당들 사이에서도 크지만 않았지만 약간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즉 가장 보수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보수당과 국민당의 경우 철저한 개인책임제에 입각해 1950년대 이전 체제인 상징적 수준의 국민기초연금을 제공하고 나머지는 직장연금, 그리고 개인연금 등으로 퇴직연금을 구성하자는 안과, 국민기초연금 수준을 파격적으로 올려 전 국민이 일정수준의 연금을 가지고 생활을 하면서, 직장연계연금과 개인연금은 개인의 편차에 따라 삶의 수준을 본인의 책임제에 주자는 중앙당 안이 충돌했다. 그러나 점차 보수당과 국민당의 입장은 다시 1950년대 이전의 제도로 돌아갈 수는 없다는 것으로 선회했고, 사민당과 협상하기 위해 우익정당들간의 차이를 좁이는 양상을 전개해 나갔다.

우익정당들의 연금재원에 관한 입장에서도 두가지 안을 놓고 저울질을 했다.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 임금생활자들이 낸 세금으로 연금퇴직자의 연금재정을 책임질 것인가, 아니면 공적연금기금을 더 많들어 운영해 미래까지 지속적으로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입장의 선택이었다. 우익 3개 정당들은 우선 후자는 현 직장세대가 이중적으로 연금재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불공평하다는 논리로 부정적이었다. 왜냐하면 공적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올려서 일정 수준의 기금을 만들어 현재 연금생활자의

재원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미래 자신들이 사용할 것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따라서 미래까지 사용하는 기금을 새롭게 만드는 것 보다 이미 조성되어 있는 기금은 버퍼기금 (Buffer fund)으로만 사용하고 현 세대의 세금으로 현 연금생활자의 기금을 마련하는 안을 선호하게 되었다 (Lindblom 2001: 57 쪽).

또 한가지 우익정당 들의 논의사항에서 중요한 이슈로 자리잡은 것은 연금운용에 있어서 국가의 역할이었다. 국가가 어느 정도 연금관리를 해야 하는지, 그리고 개인의 선택권은 어느 정도 선까지 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시각차를 보여 준 것이다. 즉 보수당과 국민당의 경우 국가가 관리하는 연금제도가 불가피하다면, 그 비중을 조금 줄여서 개인의 선택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자는 안과 다른 한편으로는 현행과 같은 국가 단일관리자 안을 받아들여 유지해 나가는 것이었다. 중앙당은 연금수준을 높여 국가가 단일 대리인으로 관리와 운용을 책임지는 것을 선호했다. 자연스럽게 우익정당들은 타협과정에서 국가의 역할을 줄이고, 개인역할의 확대에 잡았으나 처음 관철하고자 했던 30% 대 70%, 혹은 50% 대 50%의 요구, 즉 국가관리 30%, 개인 선택적 관리 70% 혹은 국가와 개인의 관리를 반반씩 나누어 역할을 부여하고자 시도하는 것은 처음부터 관철하기 위해 주장을 했다가 보다는 단지 협상용으로 제시를 한 것으로 보여졌다.

이 과정에서 사민당과 좌익당과의 협상안과 자신들의 안을 놓고 타협에 임했다. 이렇게 입장이 선회하게 된 배경에는 경제상황의 변화가 큰 영향을 끼쳤다.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3 퍼센트대에 머물던 실업율이 1991년 경제위기 이후 10 퍼센트까지 치솟고 경제성장률도 2차대전 이후 평균 4.2 퍼센트에 머물던 것이 급전 직하해 마이너스 성장과 2-3 퍼센트의 저성장 기조로 자리잡게 되자 장기적으로 현 연금체제를 유지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았을 것이다. 스웨덴의 경제는 1990년에 유동성 위기를 경험하면서 경제성장은 3년 연속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전후 최악의 경제위기에 처해 있었으며, 국가부채는 눈덩이 처럼 불고 있는 상황이었다. 무역의 비중이 스웨덴 국민총생산의 49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제가 휘청거리고 공공부분과 사기업 모두 실업자를 양산하기 시작해 10 퍼센트까지 치솟자 격감된 세수와 사회보장비의 증가로 국가부채의 증가가 일순간에 늘기 시작한 것이었다.

만약 어느 정당 혹은 이익단체가 국제 경제 상황의 변화에 매우 민감한 스웨덴 경제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연금기금 개혁에 동참하지 않고 방해가 되거나 역행하는 행위를 했을 때의 국민적 비난과 비중이 있는 단체로서의 사회적 책임감이 함께 작동하면서 모든 이익단체, 그리고 정당 들이 협상테이블에 머리를 맞대는 상황으로 연출된 것이다. 이 같은 사회적 합의의 모델은 스웨덴이라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이자 경쟁력의 기초가 되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991년 시작된 논의는 1992년 가을 첫번째 합의사항을 도출해냈고, 1994년 봄까지 모든 합의사항을 이끌어냈다. 가장 큰 몇 가지 이슈는 우선 버퍼펀드 (Premiereserven, Buffer Fund)를 어떻게 구성할 것이냐에 있었다. AP 1-3 (1960), AP 4 (1974), AP 5 (1988) 등 5개의 버퍼펀드를 두고 있었던 상황에서 첫째, 위험성을 분산시키면서 어떻게 새롭게 틀을 짜느냐, 즉 국가관리 50 퍼센트, 개인의 선택적 관리 50 퍼센트로 분리시킬 것을 주장한 우익 3개 정당들에 반해, 사민당의 경우 개인의 선택적 관리는 최소화하고자 했다. 둘째, 연금생활자들의 평균 소득분의 몇퍼센트까지 보장을 해야하느냐, 즉 사민당안의 경우 실질소득 증가율과 연계된 60 퍼센트 소득수준 보장안과 60 퍼센트 소득보장을 해 주되 매년 임금상승율에 근거해 연금을 책정하자는 안 등이 대두되었다.

1994년 9월에는 선거가 있었기 때문에 선거전에 합의에 이르자는 내부의 결정에 따라 다음과 같은 협의를 이끌어냈다. 첫째, 버퍼펀드는 수익성을 높이고 정치의 영향력을 줄이기 위해 AP 1-5를 4개로 축소해 AP 1-4로 통합하고, 추후에 AP 6를 설립해 중소기업과 지방기업체, 그리고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을 설립할 것, 둘째, 소득수준과 연계된 연금산정법을 도입하고, 세전 임금의 18,5 퍼센트 중 7 퍼센트는 피고용자가 개인소득부분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11.5 퍼센트는 사용자가 부담할 것, 셋째, 세전소득의 16 퍼센트는 공적연기금 (AP 1-4, AP 6)을 정부에서 관리하고, 2,5 퍼센트에 해당하는 부분은 사연금 위탁개인계정으로 하여 개인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 등에 대한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 1994년 6월에는 의회에서 5개 정당이 합의한 사항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금법안을 의회에 제출해 통과되었다.¹

이를 실천하기 위해 연금개선 활동위원회를 해체하고 실천위원회를 대신 구성했다. 1994년 9월 사민당이 정권의 위치에 다시 오르자 당시 잉바르 칼손 (Ingvar Carlsson) 수상은 1994년 합의 사항을 각 당의 추인을 받아올 경우 최종 합의사항을 법으로 공포해 바로 시행할 것을 천명했다.

그러나 사민당의 입장에서는 당내의 반대가 매우 강했다. 1993년, 1994년, 1997년에 있었던 당 총회에서 수백개의 반대법안이 제출되었고, 50000명 지방 당대표 들의 80 퍼센트가 반대를 하는 등 홍역을 치를 수 밖에 없었다. 반대파들은 대개 ATP의 문제점만 바로 잡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새로운 연금제도로의 이행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는 최대 방안이라는 의견과 함께, 우익정당 들이 관철해 낸 사연금 위탁개인계정 (Premiepension)은 너무 위험성이 큰 모험이라는 반대의 목소리를 확실히 했다.

¹ AP 6은 1996년 SEK 104억 (약 1조 7000억원)의 기금으로 출발했으며 1991년 해체된 임노동기금 (Löntagarfonderna, Wage Earners' Fund)의 일부로 설립되었다. 이후 2011년 가치로 SEK 185억 (약 3조 1400억원)의 가치를 가진 중견 기금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AP 6 공식 홈페이지를 참조. <http://www.apfond6.se/sv/Finansiell-information/>

하지만 사민당 지도부의 의지는 확고했다. 민주주의에서 합의사항은 반드시 관철해야 사회적 큰 혼란없이 상호존중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다고 보았다. 즉 당내의 반대를 무릅쓰고 정치적 타협을 진행하는 것도 비 민주적이겠지만, 의회에서 다른 정당들과 합의한 사항을 파기하는 것은 더 큰 민주주의의 위기라고 본 것이다. 1998년 결국 5개 정당이 추진한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완전 합의에 이르고 신연금법을 1999년에 통과시켜 2001년부터 실시하는 초석을 놓았다. 이 같은 과정은 결국 1984년 처음 사민당 하에서 처음 특별위원회를 임명해 개혁의 시동을 건 이후 최종 합의에 이르는 1999년까지 총 15년의 기간이 소요된 대협상으로 방점을 찍으며 새로운 연금제도가 시행될 수 있었다. 새로운 연금법에 따라 2001년부터 최초로 연금이 지급되었다.

표 2. 스웨덴 연금제도의 변천과정

1984	연금제도개혁을 위한 특별위원 임명
1990	'일반 국민연금 (Allmän pension, General pension)' 을 제목으로 한 특별위원회 연구보고서 제출
1991	연금개선 활동위원회 (Pensionarbetsgrupp, Pension reform working group) 임명
1992	연금개선 활동위원회의 개선방안 발표
1994	활동위원회 개선방안 원칙발표
1994	의회법안통과 (SOU 1994:20)
1994	연금개선 활동위원회를 해체하고 실천위원회 (Action group)를 임명
1998	신 연금제도 개선을 위한 5개 정당의 대타협
1999	신연금법의 제정
2001	신연금법에 따른 최초 지급 실시

4. 2006년 이후 우익정부에서의 연금생활자 삶의 개선 논의

2001년 9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고용안정법에 따르면 법적 퇴직연령은 65세로 규정되어 있지만 본인이 원할 경우 67세까지 연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법적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 레드릭 라인펠트 (Fredrik Reinfeldt) 수상이 2010년 시정연설에서 제안한 69세 퇴직연령안은 스웨덴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연금개혁을 이룬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고, 보장연금의 지출증대, 그리고 출산율 감소에 따른 노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세수의 감소는 스웨덴 연금제도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인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최대야당인 사민당은 당장 노동자의 노동연령의 연장은 개인의 의사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라고 보고 반대의 입장을 확고히 견지하고 있다. 그러나 타협점을 찾기 위해 우익정권과 공동으로 정책적인 검토를 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들의 일반적인 정서는 69세 퇴직연령 연장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퇴직연령은 여타 유럽 국가들과 비교해 보아도 높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현행보다 더 높일 경우 스웨덴 노동자가 세계에서 가장 길게 일을 하게 될 것이라는 시각이다. 현재 유럽에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퇴직연령과 장기병가 등으로 인한 조기퇴직연령의 차이를 보면 아래표와 같이 나타난다. 아래 표는 67세의 퇴직연령을 규정하고 있는 아일랜드와 노르웨이 등 2개국을 제외한 대다수의 유럽국가들이 65세를 퇴직연령으로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3. 유럽의 퇴직연령 비교 (2005년 기준)

국가	법적 퇴직연령	평균 퇴직연령
아이슬랜드	67	66,3
노르웨이	67	63,1
아일랜드	66	64,1
스웨덴	65	63,7
포르투갈	65	63,1
영국	65	62,6
스위스	65	62,5
스페인	65	62,4
핀란드	65	61,7
네델란드	65	61,5
독일	65	61,3
덴마크	65	60,9
벨기에	65	60,6
오스트리아	65	59,8
이태리	65	59,7
룩셈부르크	65	59,4
프랑스 ¹	60	58,8
그리스 ²	53	61,7

출처: Eurostat.

참조: 1. 그리스의 경우 법적 퇴직연령은 65 세로 되어 있으나 35 년 장기근속자의 경우 53 세부터 하향조정된 연금을 받고 조기퇴직을 할 수 있음.

2. 프랑스는 국민들의 저항에도 불구하고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도로 2018 년까지 퇴직연령을 60 세에서 62 세로 늘림.

독일의 경우 2029 년부터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연금 전액을 받기 위해서는 67 세까지 일을하고 퇴직을 해야하는 법이 통과되었다. 유럽의 경제위기에 맞물려 퇴직연금 등의 경제적 압박이 국가예산의 만성적자에 기여하고 있으며 앞으로 연기금의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황에서 퇴직연령의 연장이라는 묘수를 찾고자 하고 있다. 유럽 평균 수명연령이 남성 74.7 세 여성 82.5 세인 상태에서 결국 사망 직전까지 일을 해야하는 상황으로 인식되어 아일랜드(66.3 세), 노르웨이(63.1 세), 아일랜드 (64.1 세), 스웨덴 (63.7 세) 등으로 실질 퇴직연령이 법정연령보다 낮게 나타난다. 조기퇴직자가 많이 나옴으로서 국가의 퇴직연기금의 운용에 매우 부담이 되고 있어 스웨덴 정부에서도 2008 년 9 월 1 일부터 조기퇴직자의 원인이 되는 장기병가자의 기준을 강화해 65 세까지 법적 보장 퇴직연령까지 일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공적연금기금의 국자재정의 부담뿐만아니라 유럽의 낮은 출산율도 생산성 저하와 경제성장의 중대한 장애요인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연금퇴직 연령의 상한조정의 필요성과 사회적 문제점도 따른다. 결국 연금 퇴직연령의 상향조정은 스웨덴보다는 현재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아일랜드 등의 국가에서도 심각하고 고려해 볼 상황으로 인식되고 있다. 스웨덴은 상대적으로 여성출산율이 높고, 연기금의 고갈 등의 문제가 다른 유럽국가들에 비해 여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적 차원에서 대비하려는 의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 0-65세와 비교한 연금생활자의 생활수준 전망치 (0-65세의 2007년 수치를 100으로 봄)

	2007	2008	2009 전망치	2010 전망치
0-65 전체	100	100	100	100
0-65 여성	99	98	98	98
0-65 남성	101	102	101	102
66+ 전체	79	80	83	82
66-74 여성	84	87	89	88
66-74 남성	99	100	102	101
75-84 여성	69	68	70	70
75-84 남성	82	81	83	82
85+ 여성	63	63	65	64
85+ 남성	72	73	74	74

출처: 보건사회부 (Ministry of Social Affairs). 2008 년 자료.

2006년 들어선 중도보수 정당연립 정권은 연금생활자들의 실질 소득증대를 위한 연금소득 감세제도에 대한 도입 논의를 시작했다. 2006년에서 2010년까지 1차 우익정권 집권기간(2006-2010년)동안 연금생활자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표 4는 연금생활자와 나머지 국민들간의 경제생활수준을 보여준다. 66세 이상의 스웨덴 연금생활자는 여타 국민들에 비해 2007년 79 퍼센트 정도, 2008년 80 퍼센트, 2009년 83 퍼센트, 그리고 2010년에는 82 퍼센트의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을 수 있다. 이 표에서 보여주는 것 중 여성의 연금생활자의 경우 남성에 비해 12-13 퍼센트 더 열악한 생활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만큼 여성이 직장생활이 남성에 비해 짧아 연금수준이 낮으며,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은 경우도 많아 남성에 비해 낮은 연금으로 생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5세 이상의 노인들은 0-65세의 국민에 비해 현저히 낮은 63-65 퍼센트 수준(여성연금생활자), 72-74 퍼센트 수준(남성연금생활자)에서 생활하고 있음을 통계가 보여 주고 있다. 즉 연금생활자가 오래살면 살수록 연금수준이 낮아지고 있는 현 연금제도의 결과 때문에 생활의 질은 어쩔 수 없이 낮아질 수 밖에 없는 구조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006년 이후 우익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제도는 연금생활자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 인하를 단행했다. 2008년 9월 시행된 1차 연금소득세 인하에서는 아래 표 5와 6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연금소득세의 인하를 국가부담분은 매년 20억 크로네로서 국가의 세금으로 충당하고 있다. 최고 소득자인 40만 크로네 이상의 연금생활자에게는 혜택이 주어지지 않고 30만크로부터 가장 낮은 수준까지 차등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표 5에서 나타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장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는 연금생활자의 경우 연 5219 크로네를 더 소득공제를 통해 지급하게 되어 월 435 크로네를 더 수령하도록 하고 있다. 한화로 73900 원 정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저소득 퇴직자들에게는 생활수준을 어느 정도 끌어 올릴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보장연금 생활자의 경우 이같은 경향이 더욱 두드러져 있다. 그러나 다른 일반 봉급생활자들이 받고 있는 월간 최대 1950 크로네 소득공제액에 비해 25 퍼센트 밖에 미치지 않아 스웨덴의 최대 연금생활자 협회인 PRO (Pensionärs riksorganisation)에서는 더 많은 소득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http://www.pro.se/tidningen/2010/PROpensionaren-nr-10-10/>).

표 5. 연금자 소득수준별 세금공제액 (직장경험자)

연금 (1년 총 연금)	세금공제액 (연별)	세금공제 (월별)
50 000	5219	435
100 000	2075	173
130 000	911	76
150 000	818	68
200 000	818	68
300 000	818	68
400 000	0	0

출처: 스웨덴 통계청 자료.

표 6. 보장연금생활자의 세금공제액 (무노동자 연금)

	연금 (1년 총연금)	세금공제액 (월별)
독신자 ¹	91 200	2641
부부 ²	162 600	6538

출처: 스웨덴 통계청 자료.

1. 독신자가 기초연금생활자일 경우 91.200 크로네 (매달 7600 크로네)를 받음.
2. 부부 모두 무노동 기초연금자일 경우 1인당 매년 81.300 크로네 (월별 6775 크로네)가 지급됨.

2008년 2차 및 2009년 9월 시행된 3차 연금소득세 인하는 불만이 고조에 달한 연금생활자들을 달래기 위한 조치였다. 연금소득세의 인하에 따른 국가부담분은 매년 35억 크로네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아래 표 7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2차 및 3차 공제액의 수준은 1차보다 더 낮게 책정되어 연금생활자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최대 매월 340 크로네, 그리고 낮게는 70 크로네로 낮은 수준이라 큰 기여를 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vd, 2012-12-3).

표 7. 연금자 소득수준별 세금공제액 (직장경험자)

월별 연금액	2차공제액 (2008)	3차공제액 (2009)
6 000	350	340
7 000	280	270
8 000	220	200
10 000	130	90
12 000	130	70
14 000	130	70
16 000	130	70
18 000	130	70
20 000	130	70

22 000	130	70
24 000	130	70
26 000	130	70
28 000	90	70
30 000	340	10
35 000	360	0
40 000	670	0

출처: 스웨덴 통계청 자료.

4. 결론 및 제안: 갈등조정을 위한 스웨덴 모델과 한국에 주는 시사점

무엇보다도 1950년대 추가연금제의 실시를 둘러싼 좌우정당들이 정책경쟁과 대립이 국민투표를 통해 정리가 되었다면, 1990년대의 개혁은 보다 합의적 정신에 바탕을 두고 있다. 1950년대는 사회적 개혁의 틀과 방향성에 대한 좌우간의 경쟁이었다고 한다면, 1990년대에 들어서는 대내외적으로 변화된 환경으로 인해 제도개선 없이는 연금제도 자체가 큰 위기에 처할 것이라는 정당들의 공통된 인식과 외생적 변화, 즉 국제경제의 상호 의존성과 세계화에 따라 국민총생산의 50 퍼센트 정도를 수출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경제구조 하에서는 시장경제 주체의 한 쪽만의 손을 들어줄 수 없는 상황이었다는 점이다. 즉 새로운 제도가 일방적인 정치 주체가 이끌 경우 더 이상 모든 국민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상황인식이 뒷받침 되었다. 따라서 당시의 기조는 미래 연금생활자의 삶의 질을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국민경제에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는 최고의 정책조합을 찾는 것이 국익에 기여한다고 보았기 때문에 정당들 간 소모적 정책 논쟁으로는 국가미래 재정의 한 축을 담당하는 연금기금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인식이 깔려있다.

또한 위에서도 잠시 언급했지만, 스웨덴 연금개혁에서 빼 놓을 수 없는 한가지는 정책 결정의 중요한 요소로 전문가 주도형의 조사연구 보고서를 들 수 있다. 스웨덴의 정책결정에서 첫번째 단계로 정부는 전문가들로 구성된 특별위원회를 임명하는데, 이 위원회의 임무는 사상적 가치와 정치적 전략과 무관한 객관적인 조사결과를 정부에 제출한다는 데 있다. 주로 학자나 해당 분야 전문가가 위원장으로 임명되며,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은 의회조사 성격을 띠 수 있도록 의회 모든 정당에서 임명한 대표들이 참여하여, 정치적으로도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시도를 한다. 이렇게 조사된 결과는 국가조사 보고서 형식으로 SOU를 해당 정부 부처장인 장관에게 제출되고 다시 여론수렴작업인 레미스(Remiss) 단계를 거쳐 위원회는 또 다시 결론을 도출 한다. 이렇게 작성된 최종 연구보고서는 정부에서 검토 후 의회로 넘겨지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당의 의견과 당리당략적 내용 중 합의가 어려운 부분은 재고의견으로 남겨 놓고 합의된 사항만 따로 결론에 포함시킨다.

정부의 입장에서 의회로 넘기기 전에 합의안을 만드는 것이 최선이기 때문에 야당들도 참가시키는 국정협상팀을 구성해 다시 난상토론에 들어간다. 이 기간동안 다행히 합의안이 만들어지면 공동안으로 정부가 의회에 이송하며, 만약 그래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여당(들)만이 참가한 정부안을 의회에 이송하게 된다. 전자의 경우 의회에서 바로 통과만 시키는 의례적 절차만 거치면 되지만, 후자인 경우 다시 각 정당들이 각당의 정책안을 관철시키기 위해 상임임위에서 난상토론을 거친다. 상임위는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한 다음 다시 본회의로 이송해 의결과정을 거치게 된다. 역시 본회의에서도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 의결에 부쳐지게 된다.²

SOU 1990:76 은 바로 1984 년 사민당이 정권을 잡고 있을 당시 임명한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6 년간의 조사를 거쳐 1990 년에 정부에 제출한 국가보고서였다. 이 특별보고서는 1991 년 사민당을 밀어내고 정권에 오른 4 개 우익정당들이 사민당과 좌익당까지 포함하는 야당들이 가세한 연금개혁 활동그룹 (Pensionsarbetsgruppen, Pension Working Group)의 설립되어 1998 년 대 타협을 이루어낼 때까지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1990 년대의 연금개혁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었던 중요한 두 가지 요소로 정당들의 상호협조적 자세와 정책결정 과정의 특수성을 지적할 수 있겠다. 정당들은 이익단체들과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협조관계를 구축하기 때문에 정당의 협상에는 항상 이익단체들의 협조와 지원을 바탕으로 한다. 사민당의 경우 블루칼라 노조 (LO), 사무직 노조 (TCO), 그리고 교육자 노조 (SACO) 등과 유기적인 협력 관계 혹은 지원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보수당의 경우 경영자연맹 (Svenskt Näringsliv, Sf; 전신 SAF)와의 돈독한 지원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의 토론은 전 사회적 이익과 정치 및 사상적 가치의 협상테이블의 역할을 해 사회의 갈등구조를 정치의 장에 끌어들이며 해결하는 모델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각 정당 및 이익단체 들이 국민 총생산의 27 퍼센트를 차지하는 국민연금기금의 개혁이 미래 국가 경제에 두고두고 미칠 영향력을 감안했을 때, 어느 한 정권 그리고 이익단체 한편의 주도권과 승자독식 모델로는 절대 성공적인 개혁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이 또 다른 시사점을 던져준다. 한 나라의 중요한 제도의 개혁은 미래 20-30 년 이상을 내다보는 장기적 관점에서 결정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당의 책임있는 합의 정신 뿐 아니라 전 사회를 대표하는 이익단체 들도 동참하는 협상의 틀이 매우 중요한 성공의 선결조건이라 할 수 있다.

스웨덴의 연금개혁 모델을 볼 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누가, 어떤 정책을 가지고 주장해 관철시켰느냐의 관점도 중요하지만, 1994 과 1998 년 합의가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정치적, 문화적 배경의 이해도 매우 중요하다. 프랑스의 경우 퇴직연령을 60 세에서 62 세로 조정하는 것조차 사회적,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전국적 데모와 점거 및 폭력으로 얼룩진 예를 보면 스웨덴의 무폭력, 합의적 변화의 모습은 전 세계의 중요한 연구의 대상이 된다.

우리나라의 연금개혁을 위해 필요한 점은 무엇보다도 위에서 지적한 모든 이해자 집단이 수용하는 제도개혁의 틀을 갖추는데 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관계없이 자신의

² SOU 절차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최연혁 (2009)를 참조.

목소리만 키워서는 절대로 합의에 이를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함과 동시에 사회 이익단체들, 즉 노조, 경총, 전경련, 전국공무원 노조 등 사회 각 계층의 목소리를 수렴할 수 있는 체제, 즉 노사정체제의 구축과 지속적 운영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 이 같은 틀이 갖추어질 수만 있다면, 공적연금기금의 운용과 미래적 개혁에 있어서 암울한 시나리오가 아닌 국가의 새로운 비전을 짜는 진지한 토론의 장이 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스웨덴과 같은 객관적 전문가 집단을 총망라한 전문가 특별위원회를 임명해, 정부와 정당 들의 입김에 자유로운 중립적 조사를 바탕으로 해결책을 제시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리라 본다. 대통령 특별위원회든 아니면 국회특별위원회든 형식에 관계없이 가장 객관적인 상황의 인식과 국제적 비교, 그리고 학문적 고찰을 통해 대한민국의 50년 이후까지 내다보는 모델을 찾아보라고 제안한다. 국제적인 전문가들과의 국제세미나, 그리고 전문가 초청 국내세미나, 그리고 자체 난상토론 등을 통해 만들어지는 정책제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매우 민감한 사항이거나 첨예하게 의견이 대립되기 때문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내용은 결론부분에 재고사항 (Issues of Reconsideration)으로 기록하고 합의를 본 부분만 공통된 결론을 도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보다 객관적이고 모든 이해당사자들을 만족시키는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처음 연금개혁 특별위원회가 임명된 것이 1984년 이었고, 조사결과가 제출된 1990년까지 총 6년이라는 기간동안 국내외 최고의 저명한 학자, 전문가들의 의견을 총 망라해 정리했기 때문에 당대 최고의 정책자료로 사용될 수 있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정치적 차원에서는 우선 정부여당의 입장에서든, 야당의 입장에서든 자신들의 대안을 관철시키는 것이 최대 목표가 아닌, 대안들의 중간에서 만나겠다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한다. 특별위원회 자료에서 제시된 재고사항은 정치적 차원에서 국회에서 논의를 거치면서 합의를 이끌어내야 궁극적으로 해결책의 묘안을 찾아낼 수 있다. 스웨덴의 경우 처음 특별위원회가 임명된 것은 1984년 당시 사민당 지배 하에 있을 때였지만, 1990년 제출된 이후 1991년 우익정권으로 넘어간 이 후에도 지속적으로 개혁의 틀과 방향성은 변하지 않았다.

이를 위해 야당이 된 사민당을 실무위원회에 참가시켰고 (혹은 반대로 정부의 초청에 사민당이 기꺼이 응해 주었고), 열띤 토론을 거쳐 1994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었다. 1994년 선거에서 다시 정권을 잡은 사민당의 경우 1998년 다시 정당 간 대타협이 이루어질 때까지 각 당들의 당내 의견의 결집과정을 거쳐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내 민주주의적 절차도 거치면서, 큰 틀에서 정치적, 사상적 경쟁보다는 국가의 미래에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한 정권의 관심을 초월한 민주적 의사결정과정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가의 미래는 정당의 관심과 이익, 그리고 추구하는 가치보다 우선한다. 이익단체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중요한 것은 국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갈등을 야기시키는 사안에 대해서 철저하게 타협의 정치를 추구해야 국민을 갈등의 불모로 가두어 놓지 않는다는 점은 스웨덴의 연금개혁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현실에 큰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

참조문헌

- 최연혁. 2009. '사회갈등구조의 진단과 제도적 접근 - 스웨덴의 SOU 모델을 중심으로 본 한국의 대안모색.' *스칸디나비아연구*. 제 10 호. 63-95.
- Ackerby, Stefan 1992. *Pensionsfrågan*, bilaga 12 till LU 92. Finansdepartementet.
- Andersson, Sten 1993. *I de lugnaste vatten*. 고요한 물결속에서. Stockholm, Tiden.
- Baldwin, Peter 1990. *The Politics of Social Solidarity: Class Bases of the European Welfare State 1875-1975*. Cambridge, Cambridge UP.
- Berge, Anders 1995. *Medborgarrätt och egenansvar: De sociala försäkringarna i Sverige 1901-1935*. 시민권과 책임성. 1901-1935년 스웨덴의 사회보장. Lund, Arkiv.
- Bröms, Jan 1990. *Ur askan av ATP*. Stockholm, SACO.
- Bröms, Jan 1991. *Litar vi på ATP-systemet? ATP 제도를 신뢰할 수 있나?* Tiden 1991:1. En strategi för ATP-systemets anpassning. RFV-ansvar 1991:15.
- Choe, Yonhyok. 2011. "Beyond the Welfare State: Institutionalized Conflict Treatment within the Nordic Welfare State Regime." *International Journal of Peace Research*. Winter 2011. Vol. 16, No. 2, 25-42.
- Ds 1992:80. *Ett reformerat pensionsystem - bakgrund, principer och skiss*. 개혁된 연금제도. 배경, 원칙과 개략적 개관. Stockholm, Socialdepartementet.
- Ds 1994:82. *Sammanställning av remissyttranden över Pensionsarbetsgruppens betänkande Reformerat pensionssystem (SOU 1994:20)*. 연금개혁 위원회의 제안에 대한 의견수렴에 대한 종합정리. Stockholm, Socialdepartementet.
- Esping-Andersen, Gøsta 1985. *Politics against Markets: The Social Democratic Road to Power*. Princeton & New Jersey, Princeton UP.
- Esping-Andersen, Gøsta, 1990. *The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 New Jersey, Princeton UP.
- Feldt, Kjell O. 1991. *Alla dessa dagar: I regeringen 1982-1990*. 정부에서 보낸 모든 나날들. Stockholm, Norstedt.
- Gourevitch, Peter 1986. *Politics in Hard Times*.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 Heclo, Hugh 1974. *Modern Social Politics in Britain and Sweden. From Relief to Income Maintenance*. New Haven &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Hernes, Helga M. 1987. *Welfare State and Woman Power: Essays in State Feminism*. Oslo, Norwegian University Press.
- Knutas, Per 1990. *Pensionärernas ekonomi och kommunernas taxor*. 연금생활자의 경제와 기초자치단체의 요금. Stockholm. Svenska kommunförbundet 1990.
- Korpi, Sture 1991. 'ATP i takt med framtiden'. 미래의 ATP. *Tiden* 1991:1
- Korpi, Walter 1978. *Arbetarklassen i välfärdskapitalismen: Arbete, fackförening och politik i Sverige*. 복지자본주의 체제속에서는 노동자. 노동, 노조와 정치. Stockholm, Prisma.

Korpi, Walter & Palme, Joakim 1998. 'The Strategy of Equality and the Paradox of Redistribution' ,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998:63.

Lindblom, Anders. ' De borgerliga partierna och peionsreformen.' 보수우익정당들과 연금개혁. Palme, Joakim. *Hur Blev den Stora Kompromissen Möjligt* . 대타협이 가능했던 배경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Stockholm. Pensionsforum.

Lundberg, Urban. ' Socialdemokratin och 1990-talets pensionsreform' . 시민당과 1990년대의 연금개혁. Palme, Joakim. *Hur Blev den Stora Kompromissen Möjligt* . 대타협이 가능했던 배경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Stockholm. Pensionsforum. 2001.

Lundberg, Urban & Åmark, Klas. 'Social Rights and Social Security: The Swedish Welfare State 1900-2000' , *Scandinavian Journal of History* 2001:3.

Lundberg, Urban & Petersen, Klaus. 'Social Democracy and the Welfare State in Denmark and Sweden since the 1960' s' . *Tekst och Teser: Arbejdspapirer fra institut for historie. 1993:3.*

March, James G. & Olsen, Johan P. 1989. *Rediscovering Institutions: The Organizational Basis of Politics*. New York, Free Press.

Molin, Björn 1967. *Tjänstepensionsfrågan. En studie i svensk partipolitik.* 직장연금 이슈에 대하여. 스웨덴 정당정치에 대한 연구. Lund, Akademiförlaget.

Myles, John 1984. *Old Age in the Welfare State: The Political Economy of Public Pensions*. Boston, Little Brown.

Myles, John & Pierson, Paul 2001. 'The Comparative Political Economy of Pension Reform' . Pierson, Paul (red.),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Olsson, Sven E. 1990. *Social Policy and Welfare State in Sweden*. Lund, Arkiv.

Palme, Joakim 1990. *Pension Rights in Welfare Capitalism*. Stockholm, SOFI.

Palme, Joakim 1993. ' Rätten till en tryggad ålderdom: Folkpensionen i historisk och internationell belysning.' 안정적 노년의 권리. *De ekonomiska trygghetssystemen - i ett historiskt och internationellt perspektiv.* 경제적 보장의 제도. 역사적, 국제관점. Försäkringskassförbundet, FKF Debatt.

Palme, Joakim. Ed. 2001. *Hur blev den stora kompromissen möjlig? Politiken bakom den svenska pensionsreformen.* 대타협이 가능했던 배경은? 스웨덴 연금개혁의 정치.Stockholm. Pensionsforum.

Peters, B. Guy 1996. *The Politics of Bureaucracy*, fjärde upplagan, New York, Longman.

Pierre, Jon 1995. " Governing the welfare state: public administration, the state and society in Sweden" , i hans (red.), *Bureaucracy in the Modern State*. Aldershot, Edward Elgar.

Pierson, Paul 1994. *Dismantling the Welfare State? Reagan, Thatcher, and the Politics of Retrench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ierson, Paul 1995. 'The New Politics of the Welfare State.' *ZeArbeitspapier* 1995:3

Proposition 1990/91:100. 정부법안.

- Riksförsäkringsverket 1987. *ATP och dess finansiering i det medeloch långsiktiga perspektivet*. 장기적 관점에서 본 ATP의 재정. RFV anser 1987:9. Stockholm, RFV.
- Riksförsäkringsverket 1991. *En strategi för ATP-systemets framtid*. ATP 미래를 위한 전략. RFV anser 1991:15. Stockholm, RFV.
- Rothstein, Bo 2001. "The Universal Welfare State as a Social Dilemma", *Rationality and Society*, 13 (2), 225-226.
- Skocpol, Theda & Edwin Amenta 1986. "States and Social Policies", *Annual Review of Sociology*, 12, 131-157.
- Sainsbury, Diane 1996. *Gender, Equality and Welfare States*.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ocialstyrelsen. 1929. *Lönestatistiskt årsbok för Sverige 1929* (스웨덴 1929년의 봉급연감). Digitaliserad av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11. 스웨덴 통계청의 2011년 전산화 자료.
- Socialstyrelsen. 1937. *Lönestatistiskt årsbok för Sverige 1937* (스웨덴 1937년의 봉급연감). Digitaliserad av Statistiska Centralbyrån (SCB) 2011. 스웨덴 통계청의 2011년 전산화 자료.
- Stråth, Bo 1998. *Mellan två fonder: LO och den svenska modellen*. 2개의 기금사이에서. 블루칼라노조와 스웨덴 모델. Stockholm: Atlas.
- SOU 1990:76. *Allmän pension*. 국민연금. Stockholm, Allmänna förlaget.
- SOU 1994:20. *Reformerat pensionssystem*. 개혁된 연금제도. Stockholm, Fritzes kundtjänst.
- SOU 1994:21. *Reformerat pensionssystem - bilaga A*. 개혁된 연금제도. 부록 1. Stockholm, Fritzes kundtjänst.
- Stephens, John D. 1979. *The Transition from Capitalism to Socialism*. London, The Macmillian Press Ltd.
- Steinmo, Sven, Thelen, Kathleen & Longstedh, Frank (red.) 1992. *Structuring Politic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in Comparative Analysis*. Cambridge an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vensson, Torsten 1990. *Socialdemokratin dominans: En studie av den svenska socialdemokratin partistrategi*. 사민당의 지배. 스웨덴 사민당의 정당 전략연구. Uppsala, Acta Universitatis Upsaliensis.
- Åmark, Klas 1999a. 'Inkomsttrygghet i Norge och Sverige. Klass, arbetarrörelse och välfärdspolitik 1930-1970'.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임금안정. 계급. 노동운동과 복지정치. *Arkiv 1999:77-78*
- Åmark, Klas 1999b. Arbetarrörelsen, socialförsäkringssystemet och genus-ordningen 1932-1970. 노동운동, 사회보장제도와 성질서. *Sociologisk forskning. Supplement 1999*.

인터넷 자료

평균 수명에 관한 자료. 스웨덴 통계청

http://www.scb.se/Pages/TableAndChart____25830.aspx. 2012. 11월 30일 방문.

Svd. 'PRO: Stoppa den orättvisa skatten på pensionen.' 스웨덴 연금생활자 협회. 불공정한 연금세제를 정지하라. 2012-12-3 일자 신문.

PRO. <http://www.pro.se/tidningen/2010/PROpensionaren-nr-10-10/> 2012-12-3 방문.